

#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1
----------	--------

제출일자 : 1999. 3.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조직개편이후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되므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 각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
- 조직을 사무과와 전문위원으로 구분

## 개정근거

- 경남도 행정 12200 ~ 42 ('98. 10. 20) 조례·규칙모델표준안

#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